

## 국세청,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

-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지광고 세부기준 마련
- 행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행 예정

□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세무사 등\*의 과장·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,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「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」을 마련하여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.

\* 세무사, 세무법인, 외국세무자문사, 외국세무법인,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·공인회계사를 말함

□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 「세무사법」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

-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하여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,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적을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하여,
-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,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.

□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세무사 등은 ①다른 세무사 등의 수입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, ②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, ③객관적 근거 없이 “국내 최고”, “업계최고”, “환급률 1위”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, ④산출근거 없이 환급률·절세율·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

○ 그러나, 자신의 수입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,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.

○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 (모집단 크기, 통계산출 대상기간, 통계산출 방식 등)를 광고 게시·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□ 이번 과장·오인광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, 세무법인도 포함되며, 이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·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○ 이외에도, 이른바 “미국 세무사”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도 이번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□ 세무사 본인의 책임하에 제작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,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하여 게시·전송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, 허위·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.

□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, 유관단체\*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,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·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

\* 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

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개인납세국 | 책임자 | 과 장 | 손채령 (044-204-3241) |
|       | 소득세과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시후 (044-204-3242) |